

의안번호	제 375 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발 의 자	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6년 4월 18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375
----------	-----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6년 4월 18일

발의자 : 이광희, 윤홍창, 정영수,
이숙애, 이종욱, 김영주
연철흙.

1. 제정이유

참여하고 소통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원칙(안 제4조)

라. 교육의 내용(안 제5조)

마.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바.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안 제7조~안 제9조)

사. 이수증 발급(안 제 10조)

아. 표창(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조, 「교육기본법」 제2조, 「초·중등
교육법」 제2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나. 관계부서협의 : 협의 완료

다.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1) 기 간 : 2015. 2. 18.~2015. 3. 8(20일간)

2) 제출의견 : 특이사항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을 통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할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내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주의, 공화주의, 기본권 보장 등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해야 하며,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은 금지한다.
4. 학교시민들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제5조(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
2. 논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
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4. 평화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민주시민교육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강사, 교재, 교육시설, 담당부서 등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5.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연1회 교육감에게 제출하며 교육감은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3. 충청북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이수증의 발급)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교육감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

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